

### 3. 인도 SEBI, 기업지배구조 기준 개정 승인 (2014.2)

- 지난 2월,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이하 SEBI)는 인도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 기준 개정안(이하 개정 기준)을 승인함
  - 인도 기업지배구조 기준은 인도증권거래소 상장규정 중 ‘규정 49(Clause 49)’를 통칭하는 것으로, 지난해 1월, SEBI는 기준 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개정 기준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 기업법 개정안(Companies Bill, 2013)에 발맞추는 데에서 나아가 더욱 강화된 개선을 요구함
  - 개정 기준은 사외이사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을 7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상장회사의 상근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사외이사직 겸직 수를 3개로 제한함
    - 기업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 겸직을 10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또한, 개정 기준에 따라 상장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한 승계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0사는 모든 주주총회 안전에 대해 전자투표를 시행해야 함
    - 기업법 개정안은 승계정책 마련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고, 전자투표는 이사선임 등 일부 안전에 대해서만 의무화함
  - 개정 기준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표 11>과 같음

<표 11> 개정 기업지배구조 기준 주요내용

구분	내용
이사평가 의무화	자율준수규정인 이사평가를 의무화하고, 추천위원회가 이사의 재신임을 결정할 때 평가결과를 활용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최소 1년에 한 번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사외이사의 재임기간 제한	5년을 임기로 1회 연임 가능
최소 1명의 여성 이사 선임	
내부고발시스템 구축 의무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내부보고체계 및 내부고발자 보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사외이사에 대한 스톡옵션 보상 금지	사외이사에 대해 기본 수당(sitting fee)을 제외한 스톡옵션 등 다른 형태의 보상을 금지
이사 및 경영진 보상정책의 공시 강화	직원 보상 평균 대비 개별 이사의 보상 비율 등 공시 강화
추천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구성 의무화	현재 자율준수규정인 추천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
지명이사(Nominee Director)의 비독립적인 이사 취급	투자기관 또는 채권기관이 지명한 이사에 대하여 비독립적인 이사로 취급
모든 중요한(material)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	현재 사후적·주기적으로 검토하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

\* 출처 : www.sebi.gov.in